

**WHAT IF THE STALKERS IS AN IMMIGRANT?
만일 스토키가 이민자인 경우에는
어떻하죠?**

- 스토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호명령을 받는 것만으로는 스토키를 미국에서 추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 스토키가 보호명령이나 그 외의 다른 이민법과 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CRIMEVICTIM RESOURCES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EMERGENCIES 긴급연락처:

카운티 경찰서 911
전국 피해자 센터 1-800-FYI-CALL

**PROSECUTORS'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S:
검찰청의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호놀룰루시와 카운티 547-7401
하와이 카운티 934-3306
카와이 카운티 241-1898
마우이 카운티 270-7695

**DOMESTIC VIOLENCE VICTIMS SERVICES:
HOTLINE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락처**

호놀룰루시 & 카운티 841-0822
하와이 카운티 322-7233
카와이 카운티 245-6362
마우이 카운티
여성들이 여성을 도와주는
(보호소/ 긴급직통선) 808-579-9581

CFS 씨에프에스 (긴급직통선) 800-877-9888
올로카이 567-6888
라나이
여성을 도와주는 808-579-9581
CFS 씨에프에스 800-877-9888

**SEXUAL ASSAULT VICTIM SERVICES
HOTLINE: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락처**

호놀룰루 시 & 카운티 524-7273
하와이 카운티 935-0677
카와이 카운티 245-4144
마우이 카운티 800-873-8264
(라나이 와 올로카이) 866-443-5702

**IMMIGRATION LEGAL SERVICES:
이민 법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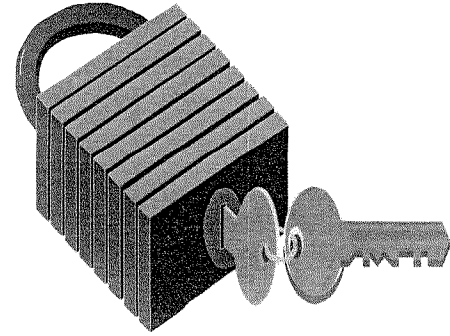
Hawaii Immigrant Justice Center
(formerly Na Loio - Immigrant Rights and
Public Interest Legal Center)
Oahu: (808) 536-8826
Neighbor Islands: 1-877-208-8828

**TEMPORARY RESTRAINING ORDER
HOTLINE: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상담소:**

오아후에 한함 538-5959

(KOREAN)

**What You Need to Know
About Stalking
스토키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여성폭력예방센터, 정의실현사무실, 미 법무부에서 보조금 No 2002-WE-BX-0049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므로 반드시 미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HAWAII DEPARTMENT OF THE JUSTICE ATTORNEY
GENERAL
GRANTS ENFORCING ARREST POLICIES
TRAINING PROJECT
하와이주 법무부
체포정책 교육 프로젝트 지원
235 South Beretania Street, Suite 401
Honolulu, Hawaii 96813
Telephone (808) 586-1150
Fax (808) 586-1373

06/2004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WHAT IS STALKING?

스토킹이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은 낯선 사람이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직장 동료, 전배우자나 전파트너, 또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나타난다.

- 원치 않는 직접적인 만남이나 우편, 이메일, 팩스나 전화를 통해 접촉을 시도할 때. 원치 않는 선물, 꽃, 메모, 다른 물건들을 자동차나 집 또는 다른 장소에 남길 때
- 겁을 주기 위해 당신의 집, 학교, 회사등으로 운전을 하며 지나간다거나 당신을 따라올 때
- 우연히 들린 곳에 예상치도 않게 스토커가 나타날 때

STALKING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의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이란 스토커가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 통신망을 통해 귀찮게 하거나 겁을 주고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신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채팅룸에서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도 포함한다.

HOW TO RECOGNIZE IF YOU ARE A VICTIM OF STALKING

내가 스토킹의 피해자인가를 인지하는 방법

스토킹이 시작된 후로 두려움, 초조함, 고립된 느낌, 죄책감, 편집증, 스트레스나 아주 예민한 경계심, 계속되는 안전 상실감, 업무나 학교 성적의 저하, 또는 타인의 신뢰가 어려워 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증상은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IF YOU ARE BEING STALKED

만일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 매번 스토킹을 당할 때마다 911 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
- 영어를 할 수 없으면, 911 교환원에게 모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을 요청한다.
- 기록 일지를 작성한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적어 둔다. 사건의 세부 정황과 증인들(있다면)의 이름도 기록해 둔다. 이 정보를 경찰에게 준다.

IF YOU ARE IN IMMINENT DANGER, GO TO A SAFE PLACE

만일 당신이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 경찰서나 소방서, 혹은 가까운 교회나, 병원, 친척, 친구나 이웃집으로 피한다.
- 공공장소로 이동한다. 스토커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방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DEVELOPE A SAFETY PLAN

안전대책을 세운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친구나 친척의 집(스토커가 모르는)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
- 출퇴근 길이나 시간대를 바꾼다.
- 가까운 가정내 폭력 예방 피난처나 성폭력 상담 센터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 자기방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듣는다.

OBTAIN A TRO, PROTECTION ORDER OR INJUNCTION

임시 접근금지명령

- 임시 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과 금지명령(보호명령)은 법원에서 발행된다. 보호명령은 가해자로 하여금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명령이며 다른 보호도 포함한다.

- 보호명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보호명령 신청이 당신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 보호명령서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WHAT IS FULL FAITH AND CREDIT AND HOW DOES IT PROTECT YOU?

철저한 법이 행과 집행제도란 무엇이며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보호명령이 있다면 미국내 어느 주나 미국 영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 있다.

WHAT IF I AM AN IMMIGRANT VICTIM OF STALKING?

만일 스토킹의 피해자인 내가 이민자라면?

- 피해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당신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유학생이나 방문객과 같은 다른 체류 신분에 있더라도, 스토킹을 당한다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법적 신분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민법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한다. 변호사와의 상담없이 이민국으로 직접 가는 것은 상가한다.
- 여권이나 영주권과 같은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또한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중요한 서류의 사본들을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겨 둔다.
-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언제든지 통역관을 요청한다.